

삼 성 벨 런 스 종 신 보 험 (2 6 0 3)
(무 배 당 , 보 증 비 용 부 과 형)
[저 해 약 환 급 금 형]

사 업 방 법 서

삼성 밸런스종신보험(26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저해약환급금형]

1. 보험종목의 명칭

- 삼성 밸런스종신보험(26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1형(납입기간 50% 저해약형)/2형(10년 50% 저해약형)]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1형(납입기간 50% 저해약형)/2형(10년 50% 저해약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 기간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 자	여 자	
종신	1형	5년납	만15세~60세	만15세~60세	월납
		7년납	만15세~60세	만15세~60세	
		10년납	만15세~60세	만15세~60세	
	2형	15년납	만15세~60세	만15세~60세	
		20년납	만15세~60세	만15세~60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최대 6개월분(당월분 제외)까지 선납가능]
- 나. ‘가’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체한다.
- 다. 해당 월계약해당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을 납입보험료에 더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나.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의 계약건별 적용은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cdot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 외부지표금리} \times 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a)$$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①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cdot \text{외부지표금리 가중치}(a) = \frac{A/B+C}{A+C}$$

$$\cdot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 = 1 - \frac{A/B+C}{A+C}$$

- A : 직전연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연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연도 보험료 수입

② 직전연도는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③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④ 가중치는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직전연도초 계약자적립액」, 「자산의 직전연도말 듀레이션」, 「직전연도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⑥ 「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2)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① 객관적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②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④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left[\begin{array}{lcl}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 \frac{a+b+c+d}{a+b+c+d} \\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 \frac{b}{a+b+c+d}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 \frac{c}{a+b+c+d} \\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 & \frac{d}{a+b+c+d} \end{array} \right.$$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연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연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연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연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연도는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3) 운용자산이익률

- ①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cdot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 ②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cdot \text{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sum_{t=1}^{12} \{ \text{직전}(t+1)\text{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 12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cdot \text{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sum_{t=1}^{12} \{ \text{직전}(t+1)\text{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 12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③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 ④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 다.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 및 가산보험금(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예정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 보다 적은 경우 “0” 으로 한다)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을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가. 각 증액서비스 개시일부터 증액서비스 기간 동안 각 증액보험금만큼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증액된다. 다만, 증액서비스 기간 중 계약자가 주계약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16. 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우에는 증액보험금도 같은 비율로 감액된다.

나. 증액보험금은 증액서비스 기간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서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각 증액보험금 금액은 각 증액서비스 개시일에 발생한다.

$$\cdot \text{증액보험금} = 12 \times \text{보험료 납입기간(년수)} \times \text{주계약 보험료} \\ \times \text{증액보험금 금액 비율}$$

증액서비스 개시일	증액보험금 금액 비율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10%
계약일부터 2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20%
계약일부터 3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30%

(주) 1. 증액서비스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2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및 "계약일부터 3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을 말한다.

2. 다만, 계약일부터 증액서비스 개시일 전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3. 연계약해당일은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연계약해당일로 하며, 이하 같다.

다. “나” 에도 불구하고 증액서비스 개시일에 직전 월의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증액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으며,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증액서비스가 개시된다.

라. “다” 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발생하는 금액은 증액보험금이 증액서비스 개시일에 정상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마. 증액서비스 기간은 각 증액서비스 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 에 따라 증액서비스가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개시되는 경우에 증액서비스 기간은 연체보험료 납입일부터 종신까지를 말한다.

14. 기타

가.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 및 더블연금전환특약(무배당)” 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특약의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플러스연금전환특약

(무배당)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에서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단, 계약일부터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2) 더블연금전환특약(무배당)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특약의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1회에 한하여 더블연금전환특약(무배당)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단,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에 한함]. 단, 신청은 최소 연금전환일 직전 3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 (2)에 따라 더블연금전환특약(무배당)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가입금액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① 해약환급금 등의 전부를 전환하는 경우

· 전환가입금액

= 전환시기(A)에 따른 아래 금액(B)과 전환시점의 주계약 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

전환시기(A)	금액(B)
1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부터 15년 경과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5배
15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부터 2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75배
2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이후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배

② 해약환급금 등의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

· 전환가입금액 = ①에 따라 계산된 전환가입금액 × 전환비율

· 전환비율 = $1 - \frac{\text{전환 직후 주계약의 해약환급금}}{\text{전환 직전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4)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의 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5) 더블연금전환특약(무배당)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의 사업방법서, 약관(단, 전환가입금액은 가입시점의 전환가입금액을 적용한다)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나.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경과기간	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1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
1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부터 2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에 1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를 정액 체 증하여 계산한 금액
2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120%

- (2) 증액서비스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에서 정한 보험금에 각 증액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 계약승계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승계특약에 의해 이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승계시점 「해약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전환 당시 회사가 정하는 금리연동형중신형태의 보험으로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점의 사망보험금은 해당시점의 「'나'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말한다.
- (2) 해약환급금(전부 또는 일부)을 활용한 계약승계는 계약자가 계약승계를 신청하고, 승계 후 계약의 피보험자를 이 보험의 피보험자의 자녀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3) 사망보험금(전부 또는 일부)을 활용한 계약승계는 보험수익자가 계약승계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4) 사망보험금(전부 또는 일부)을 활용한 계약승계에 한하여 승계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수의 승계 후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승계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은 승계 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라. 사망보험금 지급의 특례조치

-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에서 정한 해당 사망보험금과 주계약 약관 제2조의2(용어의 정의2) 제1호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 (2)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에서 정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증액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증액서비스 재원 적립액을 (2)에서 정한 금액에 추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마.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주계약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산한 「사망보험금」을 말한다.

바. 회사는 이 보험의 상품명칭을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아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1) 회사는 보험종목의 명칭 중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을 생략하여 기재할 수 있다.

예) "삼성 밸런스종신보험(26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삼성 밸런스종신보험(26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 1종"으로 할 수 있다.

- (2)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계약자가 유효한 계약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보험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한하여 사업방법서 “14.가.” 및 “16.”으로 적용할 때 가입 후 경과기간은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수준을 동일한 가입 기준의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과 비교하여 안내한다.

차.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수준을 동일한 가입 기준의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과 비교하여 안내한다.

카.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공시이율 수준의 하락에 따라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단,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증한다는 내용 포함)을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15.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은 해약률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이하,

“유해약환급금형 상품”이라 한다)” 보다 적거나 같은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나. 해지시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에 한하여 가산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지급한다.

다.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한다.

라. '가.'의 “유해약환급금형 상품”은 비교 안내를 위한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 않는다.

마. 회사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유해약환급금형 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한다.

16.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에 관한 사항

가.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유효한 계약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당시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이 계약의 피보험자 나이’가 45세 이상 90세 이하인 경우
- (2) ‘보험료 납입기간(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지난 경우
- (3) ‘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 당시 계약자적립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4)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경우

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기간」(연단위)을 선택할 수 있다.
- (2)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기간 동안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매년 감액할 금액으로 정하고, 매년 보험가입금액에서 동일한 금액을 감액하여 감액한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으로 지급한다.

$$\text{매년 보험가입금액 감액금액} = \frac{\text{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가입금액}}{\text{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기간}}$$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기간

- (3)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은 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을 포함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매년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 이후 1년마다 돌아오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급된다.
- (4) 회사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3)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매월(12개월 동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 이후 매월 돌아오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함)에 지급할 수 있다.
- (5)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는 계약자 신청에 의하여 중지가 가능하며,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감액을 중지하고,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4)에 따라 매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을 지급하던 중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중지를 신청하여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월계약해당일(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미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지급일)에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6)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때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는 종료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4)에 따라 매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을 지급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시점에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를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다. 기타 사항

신청일 이후부터 마지막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까지 “사업방법서 12.”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없다.

(별첨 제1호)

보 험 증 권 의 서 식

(별첨 제2호)

보 험 계 약 청 약 서 의 서 식

(별첨 제3호)

부 활 (효 력 회 복) 계 약 청 약 서 의 서 식